

-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각 구시정촌에 요개호(요지원) 인증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은 후, 개호지원전문원(케어 매니저) 등과 상담하여 작성하는 케어플랜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
- 또한, 개호예방·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을 개시하고 있는 구시정촌에서는, 상담 창구에서 기본 체크 리스트를 기입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·통소 등의 개호예방·생활지원서비스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1 신청

-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구시정촌에 신청합니다.

【65세 이상인 분】

개호가 필요하게 된 원인에 관계없이 급부대상이 됩니다.

【40~64세의 분】

아래에 열거하는 특정 질병이 원인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급부의 대상이 됩니다.

- ①암(말기) ②류마티스관절염 ③근위축성측색경화증 ④후종인대골화증 ⑤골절을 동반하는 골다공증
 ⑥초로기 인지증 ⑦진행성 핵상성 마비, 대뇌피질기저핵 변성증 및 파킨슨병 ⑧척수소뇌변성증
 ⑨척주관협착증 ⑩조로증 ⑪다계통 위축증 ⑫당뇨병성 신경장애, 당뇨병성 신증 및 당뇨병성 망막증
 ⑬뇌혈관질환 ⑭폐색성 동맥경화증 ⑮만성 폐색성 폐질환 ⑯양측 무릎관절 또는 고관절에 현저한 변형을 동반하는 변형성 관절증



2 요개호(요지원) 인정

- 개호나 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합니다.

①방문조사

신청 후에 인정조사원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심신의 상태나 일상생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청취조사를 시행합니다.

②1차 판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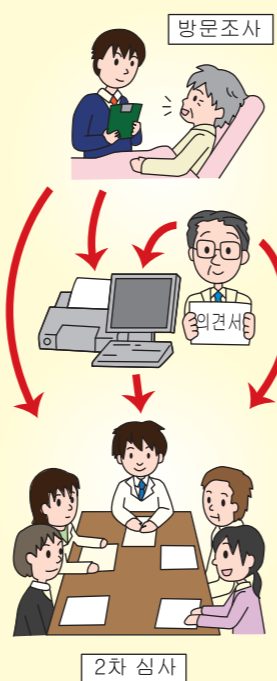
방문조사의 결과와 주치의 의견서의 내용의 일부를 컴퓨터 처리하여 얻은 데이터에 입각하여, 보건·의료·복지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호인정심의회가 1차 판정을 확정합니다.

③2차 판정

1차 판정의 결과와 주치의의 의견서를 바탕으로, 개호인정심사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차 판정을 시행합니다.

④결과 통지

2차 판정의 결과에 입각하여 구시정촌이 요개호(요지원) 인정구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.



3 케어플랜 작성

-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를 조합한 케어플랜을 개호지원전문원(케어 매니저)과 함께 작성합니다.

【요개호 1~5의 인정을 받은 분】

케어플랜은 거택개호지원사업소의 케어 매니저에게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【요지원 1~2의 인정을 받은 분】

케어플랜은 지역포괄지원센터(17페이지 참조)에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- 요개호(요지원) 인정 구분에 따라 개호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비용의 상한(지급한도기준액)이 다릅니다 (지급한도기준액에 대해서는 15페이지 참조).

4 서비스 이용

- 케어플랜을 바탕으로 서비스제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
- 계약 시에는 서비스 시간, 요금, 내용, 해약처리, 고충에 대한 대응 등을 확인합니다.
-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10%(2015년 8월부터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%)는 본인이 부담합니다. 단, 지급한도기준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부분은 전액 자기부담이 됩니다.
- 요개호(요지원) 인정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은 분일지라도, 지역지원사업에서 생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가까운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.

※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,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기다운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.

-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는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에 신청하여 입소한 시설에서 케어플랜을 작성합니다.